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 집행잔액 미반납

기 관 명 충청남도

내 용

충청남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로부터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 목적으로 [붙임]과 같이 태안군 ○○○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등 17개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 3,714백만원을 교부 받아 3,092백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생활기반계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31조, 제31조2, 제32조,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2항1) 및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 잔액을 포괄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포괄보조금²⁾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³⁾ 집행 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에 보내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 및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면 충청남도는 사업이 종료된 17개 사업의 집행 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한 경우 그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에 송부하거나,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그 집행 잔액을 중앙행정기관에 반납⁴⁾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청남도 태안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중 운동장생활체육시설 목적으로 [붙임]과 같이 2013년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350백만원 중 343백만원을 집행하고 2014. 1. 9.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그 집행 잔액 약 6,402천원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보조사업이 완료된 2014. 1. 9.부터 3년 10개월이 지난 2017. 12. 1.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붙임]과 같이 충청남도 해당 시·군에서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 17건(교부금액 3,714백만원)의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약 622백만원 상당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1항 제34조 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3) 균특법상 사업이 끝난 후의 시점은 당초 교부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계약 체결시점으로 봄이 타당(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관련 Q&A)

4) 균특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집행잔액 활용은 지방재정법 상의 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재정법 상 전용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됨, 다만 보조금 정산 문제 등을 감안하여 동일부처, 지특 내 동일계정 내의 사업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함. 집행잔액 미활용시 다음 연도 지방재정 수입으로 편입해서는 안 되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관련 Q&A(2016.4.))

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시정] 보조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 잔액 약 622백만원 상당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국고에 반납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주의] 앞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고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 집행액 및 집행 잔액 내역

연 번	사업명	사업승인 및 교부결정		집행액 (백만원)	사업완료일	집행잔액 (원)	해당 시, 군
		보조금 (백만원)	사업기간				
1	○○○○ ○○○○○○○○○	350	2013.10.18.~ 2014. 1. 9.	343	2014. 1 .9.	6,402,370	태안군
2	○○○○○○○○○○○○	8.4	2014. 3. 3.~ 2014. 4.	7.3	2014. 9.12.	1,140,453	청양군
3	○○○○○ ○○○ ○○○ ○○	22.6	2014.10.~ 2015. 7.	17.3	2015. 7. 3.	5,300,000	천안시
4	○○○○○ ○○○ ○○○ ○○	25.8	2014.12. 1.~ 2015. 6.30.	24.8	2015. 7. 7.	934,278	공주시
5	○○○○○ ○○○ ○○○ ○○	5.4	2014. 3.13.~ 2014. 4.17.	4.8	2014. 7.17.	540,000	보령시
6	○○○○○ ○○○ ○○○ ○○	8.4	2014. 3.~ 2014. 5.	7.4	2014. 8.30.	1,020,060	서산시
7	○○○○○ ○○○ ○○○ ○○	7.8	2014. 3.~ 2014. 6.	7.8	2014. 6. 2.	8,400	예산군
8	○○○○○ ○○○ ○○○ ○○	10.8	2014. 11.~ 2014. 12.	9.6	2014.12.30.	1,198,950	태안군
9	○○○ ○○○○○ ○○○○	48	215. 5.13.~ 2015.11.30.	46	2016. 2.28.	1,431,451	계룡시
10	○○ ○○○○○○○○○	1,890	2013. 1.~ 2016. 5.	1,360	2016. 5.31.	529,733,276	아산시
11	○○○ ○○○○ ○○○○	210	2017. 2.28.~ 2017. 6.27.	193	2017. 6.27.	16,843,332	보령시
12	○○○○○○○ ○○○○	72	2016. 5.30.~ 2016.11.23.	69	2016.11.23.	2,755,548	보령시
13	○○○ ○○○ ○○	255	2016. 8.~ 2017. 7.	247	2017. 7.31.	7,903,017	당진시
14	○○○ ○○○ ○○○○	150	2016. 8.~ 2016. 12.	131	2016.12.23.	19,714,470	부여군
15	○○○ ○○○○	350	2016. 7.~ 2017.10.	337	2017.11.30.	13,232,270	예산군
16	○○○○○○○ ○○○	100	2016. 7.~ 2017.10	88	2017. 9.27.	12,108,090	예산군
17	○○○○○○○○○○	200	2015.11.~ 2017. 4.	199	2017. 4.10.	1,220,354	태안군
계		3,714.2		3,092		621,486,319	

※ 충청남도 제출자료 재구성